

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외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저소득주민 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외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
액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, 담보제공시 2세대 10백만원 이하
로 확대융자 (안 제4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 3. 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 별 청
- 강원 사회 65150 ~ 460('93. 4. 27) 호로 준칙안 시달 ——— 별 청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3 ~ '93. 4. 23
- 시정조성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융자금액등)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, 담보 제공시는 1세대 10백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 <u>기금의 융자금액은</u> <u>1세대 500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다</u> ② ~ ③ (생략)		제4조(융자금액 등) ① <u>기금의 융자금</u> <u>은 1세대 7백만원, 담보 제공시는</u> <u>1세대 10백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